

問題 提示

建築公害에 關하여

金 熙春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教授)



〔Ⅰ〕 公害란 무엇인가? (PUBLIC NUISANCE)

1. 社會에 害로운 영향을 끼치는 현상으로서 그것이 생기면서 利益을 보는 사람과 害를 받는 사람이 있다.

社會에 害를 끼치는 영향이라 함은 心身 또는 生活環境에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動植物, 物的 財産等에 끼치는 영향도 포함된다.

2. 그 發生源이 不特定이거나, 特定한 경우에도 因果關係의 立證이 곤란하기 때문에 責任의 所在가 不明確하게 된다.

3. 加害의 양상이 繼續的으로 있어 그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社會的으로 受忍될 수 있는 것인가 判定가 곤란하다.

4. 私法上에 구제조치에 의한 解決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公法上의 對策이 必要하다.

公害의 種類

1. 大氣 汚染
2. 騒音
3. 水質 汚染
4. 其他(日照, 人工光線에 의한 妨害, 振動, 地盤沈下, 惡臭, 電波, 障陽等)

〔Ⅱ〕 對 策

世界의 人口는 現在 35億인데 여기 이르기까지는 數萬年이 걸렸다고 하는데, 앞으로 2, 30年內에 二倍인 70億이 될 것이라고 보면, 山이던 밭이던 全 陸地가 人類에게 農墾 配當이 되었어도 한 사람당 占有面積은 불과 얼마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만든 文明의 機器들은 점점 더 큰 公害의 發生源이 된다.

先進各國들은 벌써 여러해 전부터 여기에 對한 對策을 强구중에 있으며 法制化된 나라들도 많다.

現在까지 建築은 雨露, 風雪을 막는 것으로만 生覺하였지만 앞으로 이 公害를 막는 計劃이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建築士 여러분은 建築士 한 사람의 利益만 生覺할 것이 아니고, 社會全體를 위한 利益을 生覺해야 된다.

또한 公害問題는 하나 하나의 建築으로서 解決할 수 없는 特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地域的으로 더 나아가서 都市全體로서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專用住居地域, 專用工業 地域의 指定等이 時急히 이루어져 이러한 公害를 未然에 防止하고 既存 地域에 對한 對策도 아울러 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對한 當局의 과감한 施策이 時急히 要望된다.